

#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8월 2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
(2010. 9. 3) 상정 및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교통관리과장 문병섭)

### □ 제안이유

-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주차장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22255호, 2010. 7. 6. 공포·시행)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추가 하며,
-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·규칙을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가.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개선(안 제5조)

- 1)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지된 자는 3년 이내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
- 2) 비영리 공익법인의 수탁방법을 “수의계약”을 “경쟁계약”으로 개선함.

나.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 신설(안 13조의2)

다.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(안 별표 2의 제2호, 제5호)

- 1)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세분화
  - 판매 및 영업시설 →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
  - 업무시설(오피스텔을 제외한다),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→ 업무시설(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),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, 장례식장
- 2)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설물의 설치기준 추가(안 별표 2의 제5호)
  - 도시형생활주택(원룸형)은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.

### 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문	답 변
○ 중도해지 사유로 “부정한 방법이나 관리능력 부족”이란 조문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가 필요함.	○ 대부분이 사업성이 없어서 본인이 포기하는 사항으로 이를 한정해서 월 동안 입찰을 못하도록 정하는 것임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##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지된 자는 3년 이내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선정방법	납부하여야 할 금액	납부방법
제1항제1호의 경우	시장이 정하는 방법	시장이 정하는 금액	시장이 정하는 방법
제1항제 1호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	경쟁계약	제4항에 따른 산출금액 또는 제5항의 시장이 정하는 금액	시장이 정하는 방법
그 밖의 경우	경쟁계약	입찰가격	시장이 정하는 방법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) ① 법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택지개발사업
- 산업단지개발사업
- 도시철도건설사업(「철도건설법」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「도

시철도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「도시철도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
#### 4. 도시개발사업

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(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.

1. 도시철도건설사업(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의 경우: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 
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/210 × 철도연장(km)/8
2.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: 사업부지면적의 0.6퍼센트

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.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 2]

**부설주차장설치기준(제17조 관련)**

시설물	설치 기준
1. 위락시설	시설면적 70㎡당 1대
2.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은 제외한다), <u>종교 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</u> , 의료시설(정신병원·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), 운동시설(골프장·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), 업무시설( <u>외국공관 및 오피스텔</u> 은 제외한다), <u>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, 장례식장</u>	시설면적 100㎡당 1대
3.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),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	시설면적 134㎡당 1대
4. 단독주택(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)	시설면적 50㎡이상 134㎡이하의 경우에는 1대, 시설면적 134㎡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4㎡를 초과하는 87㎡당 1대를 더한 대수
5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, 업무 시설중 오피스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㎡이하인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70㎡당 1대, 전용면적이 85㎡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65㎡당 1대로 한다. 다만,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또는 호실당 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호실당 대 이상</li> <li>• 도시형생활주택(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</li> </ul>
6.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옥외수영장, 관람장	골프장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0.7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0명당 1대 관람장 정원 70명당 1대
7. 그밖의 건축물	시설면적 200㎡당 1대